

##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 강승수 의원 외 1명

###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 신설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
  - 예고의 방법 :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안 제19조의2 제1항)
  - 예고 기간 : 5일 이상(안 제19조의2 제2항)
- 어려운 한자어 정비
  - “깍연” ⇒ “담배를 피우는 행위”(안 제80조제4호, 제86조제4호)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